

창원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1103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5875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110338 판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최용환, 김동진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1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4,969,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2020. 3. 10.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2020. 4. 8. 접수 제319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주)D(그 대표이사가 피고 B이다)는 E1) 에 대해 건설기계 임대료
240,1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E이 (주)D를 상대로 위 장비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주)D에 송달되자 피고 B은 (주)D가 (주)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채권 297,000,000원 중 80,410,000원을 협력업체였던 원고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하고
2016. 6. 24.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주)F에
통지하였다.

(주)F은 위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2016. 7. 29. 27,940,000원, 2016. 8. 19. 25,850,000원, 2016. 9. 30. 26,620,000원 합계 80,41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 피고 B의 지시로 피고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송금받은 돈을 모두 다시 송금2) 하였다.

나. E의 원고 상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주)D의 장비대금 채권자 E은 (주)D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사해행위로 파악하고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1430호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소제기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 B은 자신이 일을 해결해주겠다고 하고는 원고 명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 B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허위였음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2019. 11. 27. “원고는 E에게 64,969,542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9. 12. 20. 위 판결(이하 ‘선행 사해행위 취소 소송 내지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의 유죄 판결

피고 B이 위와 같이 E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 대한 선행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사실 등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792, 3139(병합)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형사공판절차에서 피고 B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였으며, 2021. 1. 19.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매매행위

위와 같이 선행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피고 B은 2020. 4. 8.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 내지 7호증, 갑 8,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D와 원고 사이의 위 (주)F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F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주)D의 대표이사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B를 위하여 바로 송금하여 원고가 위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기해 얻은 이익이 없었다. 그럼에도 채권자 E의 원고에 대한 선행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함으로써 E에게 64,969,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비록 원고가 피고 B의 채권자 E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행위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B의 강제집행면탈행위와 더불어 사문서위조 등 일련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주)D의 E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고 B의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인 원상회복 부담금액 64,969,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와 같이 피고 B이 2020.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다. 위 매매계약 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없었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피고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 C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3. 10.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2의 4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김해시 대 396㎡

2. 경상남도 김해시 대 100㎡

3. 경상남도 김해시 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조적조및블록구조
 슬라브및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
 53.5㎡

4. 경상남도 김해시 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35.98㎡

(단 위 부동산들 중 1/2 지분에 한함)

1) 아래 형사사건에서는 ‘G’이라고 되어 있다.

2) 2016. 9. 30. 지급받은 26,620,000원의 경우 2016. 10. 1. 26,200,000원만 송금했으나 이는

당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과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